2024년 공연장 및 공연 종사자 안전교육 안내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공연장안전지원센터)

교육명	구분	교육 일자	지역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교육	1차	2월 28일(수)	서울
	2차	5월 29일(수)	대구
	3차	8월 28일(수)	서울
	4차	11월 20일(수)	광주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	1차	2월 29일(목)	서울
	2차	5월 30일(목)	대구
	3차	8월 29일(목)	서울
	4차	11월 21일(목)	광주
공연 종사자 안전교육	1차	4월 23일(화) ~ 4월 26일(금)	서울
	2차	7월 30일(화) ~ 8월 2일(금)	서울
무대 리깅 실습 교육	리깅 1차	3월 26일(화) ~ 3월 29일(금)	서울
	리깅 2차	5월 7일(화) ~ 5월 10일(금)	서울
하우스매니저 안전교육	1차	6월 3일(월)	서울
	2차	7월 1일(월)	서울
	3차	8월 26일(월)	서울
야외공연 및 축제행사 안전교육	1차	4월 3일(수) ~ 4월 5일(금)	서울
	2차	9월 4일(월) ~ 9월 6일(금)	서울
공연 제작 안전교육	1차	7월 10일(수) ~ 7월 12(금)	파주
	2차	8월 21일(수) ~ 8월 23(금)	파주
소극장 종사자 안전교육	3회	추후 공지	추후 공지
미래 공연 종사자 안전교육	4회	추후 공지	추후 공지
찾아가는 안전교육	10회	신청기관과 협의(상반기 5회, 하반기 5회)	

※ 교육 안내
- 신청방법 : 공연장안전지원센터 홈페이지(www.stagesafety.or.kr)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
- 교육 신청 기간 : 각 안전교육별 공고에 따름

※ 교육 일자 및 지역은 감염병 등 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교육 내용

교육명	대상	교육 내용	신청방법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교육	공연법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로 지정된 자	- 안전총괄책임자의 책임자 직무 -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 관련 제도와 정책 -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방법 -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을 위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사고사례와 사고예방 대책 -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공연장안전지원센터 홈페이지(www.stagesafety.or.kr)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	공연법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자	-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 관련 제도와 정책 -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방법 -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무대, 조명, 음향 등 분야별 안전관리 방법 -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재해대처계획서 작성 방법 - 사고사례와 사고예방 대책 -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 감염병 예방 대책	
공연 종사자 안전교육	공연 및 공연장 종사자	- 무대 특수효과 안전 및 실습 - 무대기계, 조명, 음향 시스템 안전 - 공연 및 공연장 안전제도 - 공연장 안전관리계획 - 공연장 응급상황 대처 및 실습 - 공연장 리모델링 - 우수 공연장 견학	
무대 리깅 실습 교육	공연 및 공연장 매달기작업을 수행하는 자	- 무대 리깅 역사 - 무대 리깅 핵심 개요 및 실습 - 개별 무대 공통 리깅장비 설명 - 무대리깅 도면 및 무대기호 그리기 실습 - 햄프(hemp)리깅 실습 (독립, 비독립 매듭) - 와이어로프 제작 및 인스펙션 실습 - 무대 리깅 기본 계산 (무대하중 계산, 안전하중, Bridle 등 기본 계산) - 파이프 그리드 시스템 교육, 계산 - 무대 트러스, 체인호이스트의 사용 - 국제 리거 프로그램 및 표준 소개	
야외공연 및 축제행사 안전교육	야외 공연 및 축제 행사를	- 야외공연 안전사고 요인 및 예방 방법 - 축제, 행사 안전한 관객관리 - 사고사례에 따른 대응요령 - 사고 시 응급조치 방법 - 공연장 외 공연의 안전제도 안내 - 야외공연 폭염 대비 안전	
공연 제작 안전교육	공연 세트 제작	- 공연 제작 도구 안전 사용법 - 용접 안전한 제작을 위한 실습 - 목공 안전한 제작을 위한 실습	
하우스매니저 안전교육	공연 및 공연장 관객관리를 수행하는 자	- 중대재해처벌법의 관한 법률 이해 - 개정된 공연법의 대한 이해 - 국내외 문화 공간 사고사례 - 공연장에서의 대비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대처방안 모색 및 사고예측 등 - 분임별 토론 및 네트워크	
소극장 종사자 안전교육	소극장을 운영, 종사하는 자	- 공연법 안전제도 안내 - 공연장 안전사고 요인 및 예방 방법 - 공연장 조명시설 안전관리 기초 - 사고사례에 따른 대응요령 - 사고 시 응급조치 방법	별도 신청
미래 공연 종사자 안전교육	대학교 공연 관련 학과 학생	- 공연 제작 과정 - 공연장의 구조 - 공연 제작 과정별 위험 요소와 사고사례 - 안전 규정과 기준 - 실천의 중요성 - 공연장 안전사고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생각 수렴 - 설문지 작성	별도 신청
찾아가는 안전교육	공연관련 안전교육이 필요한 기관 및 단체	- 관객 안전 - 무대시설 안전 - 공연 및 공연장 안전제도	별도 유선 신청 (031-500-0319)

참고 공연장 안전교육 관련규정 등

□ 관련 법규

공연법

제11조의4(안전교육) ①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연에 참여하는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4(안전교육) ① 법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이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교육의 대상자별 시기와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자: 공연 전 1시간 이상
2. 안전총괄책임자
   가. 안전총괄책임자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
   나. 가목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
3. 안전관리담당자
   가.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
   나. 가목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

② 법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연 안전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공연 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별표 1의2와 같다.

□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사이버아카데미

※ 공연장안전지원센터는 공연장운영자등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사이버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온라인 강의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 용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	공연법 제11조의4, 동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라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되면,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의 전후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공연자 안전교육	공연법 제11조의4, 동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라 공연자는 공연장운영자등으로부터 1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연자 안전교육은 별도의 자격요건이 없기 때문에 공연장운영자등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연장안전지원센터에서는 **공연장운영자등의 편의제공을 위해 55분에 해당하는 온라인 교육과정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공연자 안전교육 온라인 과정은 55분에 해당하므로, **공연법을 충족시키기 위한 나머지 5분은 공연장운영자등이 직접 현장**에서 피난경로, 소화기 위치, 비상 시 현장 대응요령 등의 현장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안전수칙을 별도로 교육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